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5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윤준병·임호선·박희승

이병진・서영교・이춘석

허종식 • 한병도 • 이재관

정동영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신고,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되고 있으며, 식사 제공은 조식에 한해 허용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및 제86조의2제4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6조의2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대 하여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 육성) ① (생 략)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	②
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u>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
	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
	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은 해당 농어촌민박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준수사항)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	4
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	
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u><단서</u>	<u>다만,</u>
<u>신설></u>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대하여 해당 농
	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u>수 있다.</u>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